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750

발의연월일: 2021. 9. 30.

발 의 자 : 김예지 · 박덕흠 · 류성걸

구자근・김선교・권명호

김석기・추경호・이 용

한무경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함.

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의 보존·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예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비전문가가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, 소수의 학예인력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문화재 보존·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문화재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전담관을 지정·운영하고,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

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문화재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전담관을 지정·운영하고,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.
-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문화재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⑦ 제5항에 따른 문화재전담관과 전문인력의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	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
책무) ① ~ ④ (생 략)	책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
	의 문화재 보존・관리 및 활용
	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
	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
	문화재전담관을 지정・운영하
	고,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어야
	<u>한다.</u>
	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
	의 문화재 업무를 수행할 전담
	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
	<u>한다.</u>
	⑦ 제5항에 따른 문화재전담관
	<u>과 전문인력의 지정·운영 등</u>
	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	로 정한다.